

학칙 개정안 신구대조표

| 현 행 | 개 정 |
|---|--|
| “신설” | 제1조의 2(교육이념 및 교육목표) ① 본교는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한 교육 구현을 교육이념으로 한다. ② 본교는 학문으로 준비된 지도자 양성, 경건으로 훈련된 신앙인 양성, 사랑으로 헌신된 봉사자 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
| 제7조 (수업일수) ③수업은 주, 야간 정규수업 이외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절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현장실습수업, 주말수업, 집중수업 등을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7조 (수업일수 및 수업방법) ③수업은 주, 야간 정규수업 이외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절수업, <u>방송통신에 의한 원격수업</u> , 현장실습수업, 주말수업, 집중수업 등을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④ <u>방송통신에 의한 원격수업의 세부적인 사항은 원격수업운영규정 및 관련 운영세칙을 준용한다.</u> |
| 제17조(입학허가 및 절차) 입학이 허가된 자는 정한 기일 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금 및 기타 납입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 제17조(입학허가 및 절차) 입학이 허가된 자는 정한 기일 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금 및 기타 납입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u>단, 입학이 허가된 자들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기타 사정(천재지변, 전염병 창궐 등)으로 인하여 등록금 일시납부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위하여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입학금은 제외)제도를 실시할 경우 신청절차에 따라 등록금을 분할납부한 학생도 입학을 허락할 수 있다.</u> |
| 제64조(납입금) ①입학(신입·편입·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입학금 및 등록금 등 납입금을 소정의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64조(납입금) ①입학(신입·편입·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입학금 및 등록금 등 납입금을 소정의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u>단, 등록금 부담 경감차원에서 등록금 분할납부(입학금 제외) 신청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u> |
| 제72조 (사전공고 및 의견제출) ①학칙 제정안 및 개정안은 주관 부서에서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각 부서장은 예고된 학칙개정안에 관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73조 (심의, 공포) 학칙제정안 및 개정안은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무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공포한다. | 제72조 (사전공고 및 의견제출) ①학칙 제정안 및 개정안은 주관 부서에서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이를 <u>5일이상 공고하여야 하며</u> , 각 부서장은 예고된 학칙개정안에 관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73조 (심의, 공포) 학칙제정안 및 개정안은 <u>교무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공포한다.</u> |
| | 부칙 1.(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2021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학칙시행내규 개정안 신규대조표

| 현 행 | 개 정 |
|------------------------------|---|
| 제17조의 2 (학기당 최소이수학점) “신설” | 제17조의 2 (학기당 최소이수학점) ②학기당 최소이수학점은 8학점 이상으로 한다. (단, 2013~2016학번까지는 10학점, 2012학번까지는 12학점으로 한다.) ② 4학년 2학기는 학기당 최소이수학점을 6학점으로 한다. |
| | 부칙 1.(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2021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대학원(통합)학칙 개정안 신규대조표

| 현 행 | 개 정 |
|---|--|
| <p>제6조(수업방법) 일반대학원, 신학대학원의 수업은 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야간수업과 계절수업을 병행할 수 있다.</p> | <p>제6조 (수업방법) ①일반대학원, 신학대학원의 수업은 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야간수업과 계절수업, <u>방송통신에 의한 원격수업을 병행할 수 있다.</u> ②<u>방송통신에 의한 원격수업의 세부적인 사항은 원격수업운영규정 및 관련 운영세칙을 준용한다.</u></p> |
| <p>“신설”</p> | <p>제12조(신입생 등록) ③ <u>입학이 허가된 자들 중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기타 사정(천재지변, 전염병 창궐 등)으로 인하여 등록금 일시납부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위하여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입학금은 제외) 제도를 실시할 경우에는 신청절차에 따라 등록금을 분할납부한 학생도 입학할 수 있다.</u></p> |
| <p>제15조(등록) ④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입학시 입학금 및 등록금, 기타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p> | <p>제15조(등록) ④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입학시 입학금 및 등록금, 기타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u>단, 등록금 부담 경감차원에서 등록금 분할납부(입학금 제외) 신청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u></p> |
| | <p>부칙 1.(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2021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p> |